

중국의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연구

박혜숙* · 윤인찬* · 조남호**

*건국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in China

Hui-Shu Piao* · In-Chan Yoon* · Nam-Ho Cho**

* Industri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Industri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With the chance of entering WTO, China is promoting the rebuilding of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conform to WTO/TBT requirement and international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Firstly, this research make it clear that the importance of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y, and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y.

Secondly, this paper surveyed the development course of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y and its present operating system in China.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e problems of present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y and implies the improving scheme. In the meantime, it also point out the later possible research topic in this field.

Keywords : 적합성 평가

1. 서 론

세계경제는 WTO 체계의 출범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약소국에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선진국은 유럽연합(EU),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같은 지역경제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지역주위를 추구하고 있는 동시에 환경, 안전, 소비자를 위한 문제들로 무역의 장벽을 높여 가고 있다.

WTO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국가간에 품질을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타국제도의 존중 및 국가간 상호인정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ISO에서도 세계시장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 모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제3자 품질인증제도를 구상하게 되었고,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경험한 각국에서는 ISO를 지원하여 모든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

보증 국제규격(ISO9000 퀘밀리)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도 WTO, ISO에 부합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등 관련 업무 체제정비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합성 평가 활동 전반의 중요성, 국제적인 동향에 대하여 정리함과 동시에 중국 적합성 평가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의 필요성

2.1 적합성 평가의 정의, 목적 및 역할

ISO/IEC Guide2 : 1996(표준화 및 관련 활동-일반 용어)

정의에 의하면 적합성 평가란 “해당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판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적합성 평가활동에는 샘플링, 시험, 검사, 적합성의 검토·입증·보증(공급자 선언, 인증), 등록, 인정, 승인 등이 포함되며, 기술된 적합성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인정도 포함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는 표준화 활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적합성평가는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 3가지 유형-대개 제1자, 제2자, 제3자 적합성평가라 칭한다-이다.

제1자 적합성평가는 제품, 공정, 서비스(경영시스템 포함)가 특정요건과 적합함을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선언하는 방식이다.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은 그것을 공급하는 주체의 평가결과일 수도 있지만, 제2자 혹은 제3자 적합성 평가 활동의 결과에 근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공급자 선언 혹은 제조자 선언이라고도 칭하며, 그 절차는 ISO/IEC Guide22 : 1996(적합성에 대한 공급자 선언)에 기술되어 있다.

제2자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 혹은 최종사용자가 제품, 공정, 서비스(경영시스템 포함)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주요 소비자 단체들이 제2자 적합성 평가에 주로 참여한다.

제3자 적합성 평가는 제품, 공정, 서비스(경영시스템 포함)의 평가가 공급자 및 사용자와 무관한 독립적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떤 유형이던 적합성 평가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품, 공정, 서비스(경영시스템 포함)가 특정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가 활동을 통하여 제품, 공정, 서비스(경영시스템 포함)에 있어서 표준 혹은 기준과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개선 여지를 찾는 것이다.

적합성 평가활동의 두 가지 목적 달성에 있어서 제1자 적합성 평가 활동이 두 번째 목적의 달성에 유리하고, 제2자 적합성 평가활동은 첫 번째 목적의 달성에 더욱 유리하다고 한다면, 제3자 적합성 평가활동은 또 어떤 요구에 따라 나타났다고 하는가? 이는 중복 평가 횟수의 절감에 의하여 공급자와 고객 상호간에 관련비용, 시간, 노력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며, 또한 표준화 활동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상호인정을 위한 기반구축 그리고 국제적인 교역의 촉진과 무역 장벽해소에 도움이 되는 세계적 접근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제3자 적합성 평가제도는 또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상기 3가지 유형의 적합성 평가활동은 각자의 차원에서 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 어떤 유형도 다른 유형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각자

적합성 평가활동 운영방식에 따라 유형별 효과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화사업 각 발전단계에 있어 어떤 적합성 평가활동 운영방식을 선택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2.2 적합성 평가제도의 국제 동향

지난 20년 간 ISO/CASCO(적합성 평가위원회)는 “적합성 평가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의 구현을 뒷받침할 ISO/IEC 지침, 표준 및 정보 문서를 만들어왔다. 이 문서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일치된 적합성 측정 절차를 통해 국제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우선 첫째 ISO/CASCO는 소비자 입장에서 적합성 평가활동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소비자로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적합성 마크”的 신뢰성이다. 적합성 마크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 내지는 판매자(소매상)들이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 또는 그에 수반하는 서비스에 표시되는 마크의 소유권 그리고 그 마크가 잘못 인식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ASCO 워킹 그룹12는 “적합성 마크와 그 사용”에 관한 지침을 준비중이다. 이 지침은 세 가지 구체적 측면을 담고 있는데, “적합성 마크의 디자인”, “적합성 마크의 보급 시스템” 그리고 “적합성 마크의 소유권 및 관리”가 그것이다. 가능한 한 넓은 관점에서 많은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으며, 소비자 입장이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기술적 규제 및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국제 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역상의 기술장벽협정(WTO/TBT)이 체결되었다. TBT협정은 무역에 있어 장벽을 없애는 방편으로 다른데서 실시한 적합성 평가결과를 인정할 것을 장려한다. TBT협정은 적합성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평가 승인에 있어 평가제도의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CASCO는 제3자 적합성 평가 개념 및 관련 지침을 만들었으며, 적합성 평가절차를 위한 ISO/IEC 표준 및 지침을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일치된 적합성 평가에 접근을 수용하는데 있어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셋째, 생산자(공급자) 입장에 있어서 적합성 평가 2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CASCO는 ISO/IEC 지침 22(제1자 적합성 평가 : 적합성에 관한 공급자 선언)를 작성하였다. 공급자 선언은 생산자

(공급자)가 물품, 절차 및 서비스가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서면 보증을 제시하는 절차이다. 공급자 선언은 생산자가 시험 위치 또는 다른 적합성 평가절차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며, 적합성 확보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자에게 있어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공급자 선언의 활용은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일본규격협회는 2001년 4월부터 자기적합성선언 라벨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자기적합선언라벨의 등록 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공급자 선언에 대한 신뢰 촉진, 강화 및 증진을 위해 CASCO내에서 야심찬 신규 작업 항목이 승인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ISO/IEC Guide22-적합성에 관한 공급보장 선언의 일반기준-를 국제표준 ISO/IEC17050으로 전환, 그리고 새로운 표준 ISO/IEC 17051의 개발, 적합성을 위한 공급자 선언의 문서화 요건 설정에 관한 것이다.

넷째, 표준 작성자 입장에 있어서 표준 없는 적합성 평가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올바르게 규정된 표준이 없는 적합성 평가의 가치는 미약하다. 그러므로 적합성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표준 작성자와 적합성 평가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통의익을 추구하는 것이 적합성 평가활동의 주안점이다. 이를 위해 CASCO는 ISO/IEC Guide7(적합성 평가에 적합한 표준 초안 지침)을 개발했다.

다섯 번째, 적합성 평가기관에 있어서 적합성 평가활동 그 자체도 표준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1997년 4월 ISO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CASCO의 활동영역이 적합성 평가를 위한 국제표준의 제정을 포함하도록 넓힐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ISO/CASCO는 대부분의 작업에 걸쳐 상호인정을 위한 기반구축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반면,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합성 평가 관련 ISO/IEC 지침, 표준 및 정보문서를 기초로 하여 각 나라에서는 WTO/ TBT협정 및 시장의 요구나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적합성 평가절차의 일치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유럽연합(EU)에 있어서 EU는 물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기구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기술적 조화와 표준화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식(New Approach)과 높은 지위를 갖는 적합성 평가에 관한 세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이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접근방식들 사이에 공통된 맥락은 그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에 공적인 개입을 제한하고, 사업과 산업으로 하여금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관한 가장 타당한 선택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적합성 평가에 있어서 세계적 접근방식의 주요 목적은 투명성을 규제하는 그리고 비규제의 “자발적”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들 중에 하나는 적합성 평가기구들의 권한과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뢰감을 조성해서 이러한 기구들에 의해 제출된 상호 인증과 결과에 대한 수용을 촉진시키도록 의도한 것이다.

세계적 접근방식에 의해 예견된 두 가지 주요 도구들은 적합성 평가기구들의 권한을 설명하기 위해 선호되는 수단들로서 표준과 인정제도의 활용이였다. 인정제도가 자발적인 부문에 적용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접근방식은 가시적 적용과 법률의 규정 정도를 더욱 증대시켰다. 이제 세계적 접근방식에 근거한 20개 이상의 지침들이 있는데, 넓은 범위의 산업 제품들을 포괄하였다. 자발적 부문에서 인정은 또한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발전되어 왔다. 인정의 신뢰성 구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유럽 공동인정위원회(EA)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정(MLA)운영을 지원해왔다. EA의 목적은 인정을 받은 적합성 평가기구들에 의해 제출된 적합성 평가결과들(검사 보고서, 제품 인증서 등)의 상호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EA의 다자간 협정측면에서 동등성 평가과정에 의해 근거를 둔 일반 지침의 사용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에 있어서도 ISO/CASCO의 의도와 지침을 가급적 따르는 한편, 자국 실정에 맞는 적합성 평가분야의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물론 각 나라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적인 이질성으로 인하여 운영제도, 모델 그리고 효과의 차별은 있겠지만 공통적인 발전추세는 분명하였다. 그것은 일치된 적합성 측정 절차를 통해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각 나라 적합성 평가활동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부적절하고 잘못된 적합성 평가가 행해지고,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시행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 내에서의 인증서 위조, 시험보고 그리고 불법은 아니지만 객객할인 서비스를 해준다던지 동시에 인증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같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ISO/CASCO는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 ILAC(국제시험소인정협력기구)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되며, 적합성 평가활동이 표준화 활동 및 무역장벽 해소에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중국의 적합성 평가제도 발전과정 및 현황

3.1 중국의 적합성 평가제도 발전과정

2장에서 설명한 적합성 평가 정의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는 표준화 추진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며, 우리 주변에 있어서도 시시각각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많은 적합성 평가활동이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적합성 평가활동에 있어서 중국의 적합성 평가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4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1978년 전 : 계획경제단계) : 이 단계에서의 중국 적합성평가활동은 완전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아래 사회적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조직과 인력의 자격 인정, 제품의 합격여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검사 활동이었다. 그 당시 중국사회 특수한 환경에 있어서의 적합성 평가 활동은 제1자 적합성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1978-1989년 : 시장경제도입단계) : 1978년부터 실시한 경제개방정책은 표준화사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한편 적합성 평가활동도 추진되었다. 먼저 1981년에 적합성 평가에서 최초로 중국전자기기인증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후 IECEE(IEC전자기기안전규격적합시험제도)의 구성원으로 되었다. 따라서 1986년 국가표준국으로부터 제품인증표시제도를 도입하여 “합격인증”과 “안전인증”을 실시하였으나 활성화는 되지 못하였다. 또한 1984년에 국무원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조례” 그리고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이 공포되면서 국무원아래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이 설립되어 수출입 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1990년-1999년 : ISO인증활성화단계) : 1988년 중국의 “표준화법”, “수출입상품법”등이 최초로 공포되고, 1991년 국무원의 제품 인증 관리 조례가 공포되면서 중국의 적합성 평가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1991년에 중국품질·기술감독국 산하에 중국 방원(方圓)마크 인증위원회(CQM)가 설립되고, 중국출입경검험검역국 산하에 수출입품질인증위원회(CQC)가 설립되면서 제품인증(의약품, 전자기기 제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중국표준체제 강제표준과 임의표준에 따라 강제인증(안전인증)과 임의인증(합격인증)이 있다.

그러나 강제표준이라해서 모두 강제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인증제품목록”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역시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제도를 실시한다.

인증제도의 도입은 적합성 평가제도의 민영화, 사회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3년 “제품품질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정부, 기업체 그리고 소비자에 있어서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제규격에 따라 인증체제의 구축 도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제품인증 및 감독과 관련되는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1994-1995년 사이에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의 허가 아래 다음의 4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최초로 설립된 위원회는 중국품질시스템인증기관 국가인정위원회(CNACR)로서 ISO9000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을 수행하고, 두 번째는 중국제품인증기관 국가인정위원회(CNACP)이다. 이것은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국가인정기관이며, 세 번째로는 중국인증심사원 국가등록위원회(CRBA)이고, 네 번째는 중국실험실국가인정위원회(CNACL)이다. 결국 이 4개의 위원회는 각각 품질시스템, 제품, 인증 관련 심사원 또는 시험소에 대한 인정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1998년 8월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의 허가를 얻어 2000년 5월 “중국적합성평가국가인정센터”(CAB)가 설립되었다. 상기 4개 위원회는 모두 CAB산하에 속하는 인정기관이다.

이러한 시스템아래 인증관련 업무 추진 상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CAB시스템아래 연도별 인증업무 추진 상황

연도	인정 위원회	CRBA (누적)	CNACR (누적)	CNACP(누적)		CNACL (누적)
				업체수	인증서	
1996년 전		1700	543	5372	12877	56
1996년 말		2100	1667	5556	18565	69
1997년 말		3400	4042	6852	25285	95
1998년 말		4924	8245	8572	36592	165
1999년 말		6978	15123	10853	48863	241
2000년 말		9363	25657	14298	64985	374
2001년 말		11861	37706	18732	85026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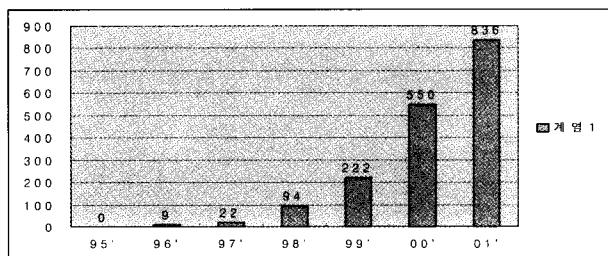
한편, 중국출입경검험검역국도 자체 업무수행에 따라 별도의 중국수출입평가인정센터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산하에 인정위원회(CNAB)를 설립하여 ISO9000품질시스템인증을 포함한 시스템인증 그리고 제품인증(CCIB 마크 인증)기관의 인정과 심사원 교육·등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중국국가출입경검험검역실험실인정위원회(CCIBLAC)를 설립하여 실험실 인정업무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별도의 인증인정업무, 특히 수출입상품에 대한 강제적인 안전품질허가제도는 중국전자기기인증위원회(CCEE)에서 수행하는 강제적 제품안전인증(CCEE인증)과의 중복 인증 현상이 나타나 고객들의 불만을 많이 일어 켰으며, 이러한 현상이 중국WTO가입 협상중의 하

나의 주안점으로 제기되었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ISO인증 관련 인정위원회가 2개였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CNAB로부터 교부된 품질시스템 인증회사는 20080사였고, CNAB에 등록된 품질시스템 심사원은 3038명이며, CCIBLAC로부터 인정된 시험소는 264개였다.

또한 1996년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이 공포되어 ISO14001인증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은 국무원 허가를 얻어 1997년 산하에 중국환경관리시스템인증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환경관리시스템인증기관 인정위원회(CACEB)와 중국환경인증인원국가등록위원회환경관리전문위원회(CRCEA)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인증인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관리시스템인증 관련 사업 추진상황은 <그림3.1>과 같다.



<그림3.1> 연도별 환경관리시스템 인증업체 확보 수

그리고 WTO가입, 무역 장벽제거 등을 대비하여 외국계인증기관들에게 한정하는 국내활동(CE, UL, QS-9000, HACCP 등 국제인증)을 허락하였으며, ISO9000을 위주로 한 국내 적합성 평가활동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활동의 국제화를 위하여 CNACR와 CNAB는 선 후 IAF, IATCA(국제심사원 양성 및 등록 협력기구), ILAC, PAC(태평양 인정협력기구), APLAC(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기구) 등 국제적인 조직에 가입하여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중국 적합성 평가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공통된 맥락·본질적인 것들에 공적인 개입을 제한하고 사업과 산업으로 하여금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달리 중국 고유 상황에 있어서 인증인정업무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으므로 그 민영화, 사회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민영화, 사회화를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주식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시범수행하였다.

네 번째 단계(2000년 이후 : 글로벌적 합성평가단계) : WTO가입을 계기로 글로벌표준화 및 적합성평가시스템과의 접목을 위하여 2001년 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 국

가출입경검험검역국을 합병하여 중화인민공화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을 설립하고, 산하에 국가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립하여 전국인증인정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구축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1993년에 공포·시행한 “제품품질법”개정을 통하여 제품품질 확보에 있어서 적합성 평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시켰다.

CNCA는 국내 인증인정사업상의 불합리적인 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내인증인정관련기관들 뿐만 아니라 외자계인증관련기관들도 포함하여 통일적인 관리 및 감독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동안 발생이 많았던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의 허가로 설치된 인정위원회CNACR, CNACL, CRBA와 중국출입경검험검역국의 허가로 설치된 CNAB, CCIBLAC를 합병하여 CNAB(중국국가인증기관인정위원회), CNAL(중국실험실국가인정위원회), CNAT(중국국가심사원교육등록위원회)로 개편하고, 또한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에 소속된 중국환경관리시스템인증기관인정위원회와 중국환경인증인원국가등록위원회환경관리전문위원회도 CNAB와 CNAT에 통합시켜 통일된 중국적합성평가국가인정센터(CAB)를 정식으로 2002년 8월 20일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중복인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선 강제적 제품인증에 대하여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을 공포하였으며, 2002년 5월 1일부터 “4개 통일”제도-통일목록, 통일표준·법규·적합성 평가절차, 통일표시(CCC표시), 통일비용(종전 중국전자기기인증위원회와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시행한 “CCEE”표시 인증과 “CCIB”표시 인증은 2003년 4월 30일까지 유효)-를 시행하였다. 1차적으로 공포된 강제적 제품인증목록에 따른 제품종류는 132종류이고, 분야별 강제적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개 인증기관과 68개 시험검사기관(2002년 3월 현재까지)이 허가를 얻어 2002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통일된 강제적 제품인증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2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2001년 제품계량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CNCA는 재심사를 거쳐 319개 제품품질검사(실험)기구에게 계량인증합격증을 교부하였다.

2002년 3월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위생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CNCA는 1995년 10월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생산기업위해분석 및 관전관리점(HACCP)관리시스템인증관리규정”을 공포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HACCP인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직장안전보건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00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 전국직업안전위생관리시스템인증지도위원회, 전국직업안전위생관리시스템인

증기관인정위원회 그리고 전국직업안전위생관리시스템심사원등록위원회가 설립되어 직업안전위생관리시스템인증업무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2002년 7월까지 인정받은 직업안전위생관리시스템인증기관은 18개이고, 등록된 심사원은 2000여명이다.

그리고 최근 IT산업발전과 ISO17799정보안전관리표준채용을 대비하여 2002년 4월 CNCA주체로 국가정보안전증평인증시스템 워크그룹이 설립되어 관련 업무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CNCA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연합하여 “인증기관 및 관련 교육, 컨설팅 기구의 승인·등록과 감독 관리 방법”을 공포하여 외자계 관련 기구를 포함한 중국내 활동 중인 모든 인증인정 관련 기구에 대한 통일적 관리체계 구축을 시도하면서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 정부가 WTO가입시 WTO와의 약속을 고려해서 시행한 제도이다(“관리 방법”的 요점은 3.2장 참조)

그리고 WTO/TBT협정에 따라 2004년부터 외자계기관에게 적합성 평가 관련 사업의 개방을 대비하여 중국수출입상품검험총공사와 미국UL안전검사측정실험실과의 합작협의가 2002년 6월 체결되었다.

이외에 각 업종별(의약, 위생, 환경, 안전, 건축, 자원 등)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 및 검사 업무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인력자격인증인정 업무도 적합성 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분야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표준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적합성 평가활동 범위는 점차 늘어날 것이며, 이 활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3.2 중국의 적합성 평가 현행제도(2002년 7월 현재)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적합성 평가 활동에 있어서 중국의 적합성 평가 현행 제도는 2001년 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설립되고, 산하에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설립됨에 따라 전국인증인정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적합성 평가활동 통일화, 체계화, 민영화, 산업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CNCA는 전국인증인정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주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인증인정, 안전품질허가, 위생등록 및 적합성 평가 등 관련 법률·법규의 초안 작성과 시행; 인증인정, 적합성 평가 활동의 감독관리제도와 규정

의 작성, 공포 및 시행;

2. 국가인증인정 및 적합성 평가사업의 방침, 정책, 제도의 연구와 시행; 전국인증인정 업무간의 조율; 관계된 인정기관과 인력자원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3. 강제성인증, 안전품질허가제도에 관련된 제품 목차 확정; 인증표시방법; 적합성 평가절차 및 기술규칙의 확정; 강제성인증 및 안전품질허가사업의 시행과 관리;
4.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생산, 가공업체의 위생등록을 위한 심사, 등록 및 공포;
5. 관련법에 따라 인증 시장의 감독과 관리(임의 인증을 포함한 인증관련 컨설팅, 교육 등 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도 포함함); 인증관련 기구들(외자계기구 포함)에 대한 자격심사와 감독;
6. 교정, 측정, 검사를 위한 실험실의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 및 자격 인정 업무의 관리; 출입경검험검역실험실 그리고 제품품질감독검험실험실에 대한 평가, 계량인증, 등록 및 자격인정 업무의 시행; 강제성인증, 안전품질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그리고 인증관련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기구에 대한 승인;
7. 정부 명의로 참가하는 인증인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국제적인 활동에 대한 관리;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적인 적합성 평가 조직(예 : IAF, PAC등)활동의 참여; 민간조직 국제적 적합성 평가 활동 참여에 대한 관리;
8. 인증인정 관련 국제규칙, 지침 및 표준에 대한 연구와 홍보; 인증인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WTO/TBT 및 WTO/SPS(위생 및 동식물검역조치협정)에서 요구하는 인증인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정보의 통보;

상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CNCA는 또한 중국적합성평가국가인정센터(CAB)를 설립하였다.

중국적합성평가국가인정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중국경내 모든 관리시스템과 제품 등 인증기관에 대한 자격인정과 감독관리;
 2. 실험실, 검사기관 그리고 관련기관에 대한 통일적 국가인정;
 3. 전국 인증 관련 교육기관, 인증 관련 인력자원 양성 코스에 대한 인정;
 4. 각종 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검증 및 등록
- 중국적합성평가국가인정센터는 CNAB, CNAL, CNAT 업무를 부여받으며 중국경내 모든 적합성 평가활동의 통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면서 현행 각종 적합성 평가 관련활동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많은 적합성 평가 활동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업무 조율과 체계 정비가 이루어 질 것이다. 아울러 CNCA주관으로 “부급연석회의제도(部級聯席會議制度)”를 도입하여 각 부처간 그리고 제도간의 조율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통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CNCA는 “인증기관 및 관련 교육, 컨설팅 기관의 승인 등록과 감독 관리방법”을 공포하는 등 외국계 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대한 통일적 관리·감독 작업을 착수하였다.

“인증기관 및 관련 교육, 컨설팅 기관의 승인 등록과 감독 관리방법”에는 인증기관은 물론 인증관련 교육 및 컨설팅기관에 대해서도 등록·승인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외자계 인증 관련 기관에 대한 등록, 승인 및 감독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외자계 인증 관련 기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인증 관련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만족 필요;
2. 법인일 경우 등록 자본 35만 달러[대표처(정보수집, 교환활동은 가능하지만 영업활동 불가)일 경우 제외];
3. 외국투자자는 소속 국가인정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았으며, 연혁 3년 이상;
4. 2003년 12월 11일까지 외자투자자가 경영권(지분에 따른)을 가진 법인 신청 불가;
5. 2005년 12월 11일까지 외국계 독자법인 신청 불가;
6. 외국계 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연도보고서 심사, 기구 운영에 대한 샘플링 검사 등 시행

상기 CNCA에서 수행하는 인증인정 관련 업무 외에 중국의 적합성 평가활동은 또 각 산업별(의약, 위생, 식품, 환경, 안전, 건축, 자원 등)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인증 및 검사 제도와 인적자원자격인정제도도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3.2>와 같다.

4. 중국 현행 적합성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1 중국 현행 적합성 평가제도의 문제점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 현행 적합성 평가 제도에 있어서 다음의 5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적합성 평가활동의 역할 문제

2장에서 설명하였지만 적합성 평가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품, 공정, 서비스(경영시스템 포함)가 특정요건에 적합함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가활동을 통하여

제품, 공정, 서비스(경영시스템 포함)에 있어서 표준 혹은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개선 여지를 찾는 것이다. 어떤 유형의 적합성 평가이던 상기 두 가지 목적 달성을 긍정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그 활동 자체의 존재 가치는 상실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운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인증기관과 관련자들은 적합성 평가활동의 궁극적인 목적과 역할을 무시하고, 자체 특수한 기능을 이용하여 적합성 평가 수행을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합성 평가활동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도 자체의 존재가치마저 논의거리로 되어 가고 있다.

(2) 적합성 평가 활동의 이질성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 활동의 범위는 아주 넓다. 기업체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검사 활동부터 사회 전반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각종 검사, 평가 등록 등 많은 활동이 적합성 평가 범위에 할당된다.

그러나 각종 적합성 평가 활동에 있어서 그 주요 목적, 활동 범위 그리고 역할은 모두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하고 다양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현지 문화, 그 나라 정치 및 경제 체제 그리고 경제발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운영방식을 선택한다면 효과는 물론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다양한 적합성 평가 활동에 대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적합성 평가 활동의 서비스 의식과 독립성 문제

적합성 평가 활동의 두 가지 목적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활동의 서비스 의식이 강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 배타적인 서비스 의식과 독립성 문제는 어떤 적합성 평가 기관과 평가자들에 있어서 모두 직면 할 문제이지만 이의 추구형 적합성 평가활동들의 범위로 현재 많은 적합성 평가 활동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설팅과의 철저한 독립성 보장의 요구는 오히려 형식적인 독립성 현상이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욱 크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적합성 평가제도의 단일성 문제

적합성 평가 활동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다양한 적합성 평가제도 그리고 그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교육, 컨설팅 제도의 도입으로 표준화 사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제도들은 보통 민간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해 왔다.

<표 3.2> 중국의 현행 주요 적합성 평가제도 및 유형(2002년 7월 현재)

제도 구분	강제성제품 인증제도	임의제품 인증제품 (환경표시, 절능표시 포함)	유기식품 인증제도	녹색식품 인증제도	실험실·검사기구 인정제도
주 요 목 적	• 인류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보호 및 공공안전을 위하여	• 제품품질의 고도화, 생산 효율의 향상 • 거래 단순화, 소비의 합리화 도모 • 사회 종합 효율향상	• 농촌 환경보호사업 발전 • 농촌 생태시스템 보호 • 환경 친화적인 안전제품 제공	• 환경보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 실험·검사 데이터 공정성 확보 • 중복 실험·검사 제거 • 국제 상호인정 추진
주 관 기관	• CNCA(정부 기능), CAB • CNAB(인정위원회)	• CNCA(정부기능), CAB • CNAB(인정위원회)	• 환경보호총국(정부기능) • 유기식품 발전센터(OFDC)	• 농업부(정부기능) • 중국 녹색식품 발전센터	• CNCA(정부기능), CAB • CNAL(인정위원회)
관 련 법 규	• '표준화법', '상검법', '제품품질법' • '표준화법시행조례', '상검법시행조례' • '제품품질인증관리조례' •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	• '표준화법', '상검법', '제품품질법' • '표준화법시행조례', '상검법시행조례' • '제품품질인증관리조례' • '제품품질인증관리조례'	• '환경보호법', '제품품질법' • '제품품질인증관리조례' • '유기식품인증관리방법' • '상표법'	• '제품품질법' • '제품품질인증관리조례' • '녹색식품표시관리방법' • '상표법'	• '제품품질법' • '실험실인정규칙'
인 증 및 검 사 대 상	• '강제성제품인증목록'	• 광공업 제품 및 가공기술 •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 보유한 제품 및 기술 • 관련 산업 제도별 대상제품 목록	• 농산물 및 부식품	• 녹색식품 및 녹색식품 생산기업	• 실험실, 검사, 측정, 교정 기구
평 가 내 용 및 방 법	• 설계검증, 형식시험, 공장 심사 • 시판품 조사 • 사후관리	• 형식시험, 공장심사 (품질시스템 포함) • 시판품 조사 • 사후관리	• 서류심사 • 현장심사, 제품검사 • 사후관리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시설, 자원, 관리 시스템) • 사후관리	
제 도 의 성 격	• 강제 제도	• 임의 제도	• 임의 제도	• 임의 제도	• 강제 제도
시 행 일 자	1989	1991	2001	1990	1989
인 증 규 격 또는 기 준	• 관련 강제성 국가표준 • 강제성 산업표준 • 관련 기술법규	• 관련 국가표준 • 관련 산업표준	• OFDC유기인증 표준 • '식품위생표준' • '유기식품기술규정'	• '녹색식품 표준체계'	• '실험실인정기준'
표 시 방 법	'CCC'	• 산업별 제도에 따라 다름	생략	생략	인증서
유 효 기 간	5년	5년	2년	3년	3년
사 후 관 리	년 최소 1회	년 1회	• 시판품 조사	• 매년 사후심사	매년
확인 수 (2001. 12월 현재)	인증기관 • 9개 인증기관 • 68개 실험·검사 기관	• 22개 인증기관 • 673개 국가실험기관	• OFDC • 각 지방 21개 지사	• 지방 38개 지사 • 56개 산지환경측정기구, 9개 제품검사기구	• CNAD 국가 실험실 인정 위원회
심 사 원	-	-	-	-	2001명(2002년 7월 31일 현재)
인증 업체 / 제품 확보 수 (2001. 12. 31)	3399인증서 (2002년 5월 31일 현재)	-	• 유기 생산기지 : 160,000ha • 200개 품목, 유기전환기지 : 260,000ha	• 619개 기업, 1018개 품목 • 면적 : 226만 ha	• 915개 실험실(그 중 검사 측정실험실 828개, 교정실험실 87개)(2002. 7. 31)
국 제 교 류	• IECEE CB회원 발급의 CB 인증서만 인정함(2002년 4월 현재)	• IAF, PAC 등 국제인정기관 협력기구 활동에 적극 적인 참여	• OCIA인증 대리 • IFOAM 회원(1989년 가입) • IFOAM으로부터 인정 심사 추진중	• 1993년 IFOAM에 가입	• APLAC 가입
비 고	• 특수용도제품 간제성인증 면제가능	• 식품, 의약품류 제외 • ISO/IEC Guide 65 참조	• ISO/IEC Guide 65 참조	• ISO/IEC Guide 65 참조	• ISO/IEC Guide 58 참조 • ISO/IEC Guide 61 참조 • 적합성평가제도별 실험실/검사기구 별도 인정

※ OCIA : 유기농산물발전협회(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 :

(다음에 계속)

IFOAM : 국제유기농 경향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제도 구분	제품 품질검사기구 계량인증제도	관리시스템 인증제도 (품질, 환경, HACCP등)	직업안전위생 관리시스템 인증제도	의약품 GMP 인증제도	인적 자원 및 교육·연수 기관 인증제도
주 요 목 적	• 소비자 이익보호 • 경쟁체제 구축 • 상호인정 추진	• 경쟁력 향상, 고객 신뢰성 증대 • 무역장벽 제거	• 노동자 건강과 안정을 위하여 • 사고발생 예방	• 소비자 이익보호 • 무역장벽 제거	• 인전자원 확보 • 인재육성 체계 구축
주 관 기 관	• CNCA(정부기능), CAB • CNAL(인정위원회)	• CNCA(정부기능), CAB • CNAB(인정위원회)	• 국가경제무역위원회(정부기능) • 전국직업안전위생관리시스템인정위원회	•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정부기능) • 의약품인증관리센터	• 인사부, CNCA(정부기능) • 산업별 인적자원부 • CNAT(인정위원회)
관 련 법 규	• '제량법', '제품품질법' • '제량법시행세칙' • 제품품질검사기구계량인증 관리방법	• '제품품질법', '수출입상검법', '환경보호법' • '식품위생법' • '관련인증인정규칙' • '식품생산기업HACCP관리 시스템인증관리규정'	• '노동안전법'	• '의약품관리법' • '의약품 GMP인증관리방법'	• '교육법' • 인증인정관련법규
인 증 및 검 사 대 상	• 제품품질검사기구	• 모든 관련 조직	• 모든 조직	• 의약품	• 인적자원 • 교육연수 기관
평 가 내 용 및 방 법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시설, 자원, 관리 시스템) • 사후관리	• 서류심사 • 현장심사(관리시스템) • 사후관리	• 서류심사 • 현장심사(관리시스템) • 제품검사 • 사후관리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시설, 자원, 관리 시스템) • 제품검사 • 사후관리	• 서류심사 • 현장심사(시설, 자원, 관리 시스템) • 사후관리
체 도 의 성 격	강제제도	임의제도	임의제도	임의제도	강제 제도, 임의제도
시 행 일 자	—	품질 : 1993, 환경 : 1997, HACCP : 2002	1999	1995	—
인 증 규 격 또 는 기 준	• 검사 범위별 기준 다름 • 관련 기준 참조	• GB/T 19000-2001 • GB/T 24001-1996 • '기업HACCP관리시스템수립, 운영 기본요구'	• GB/T 28001-2001 • '직업안전건강관리시스템 심사규칙'	• '의약품생산품질관리규칙'	• '관련 기준'
표 시 방 법	인증서	인정위원회 로고, 인증기관 로고	인정위원회 로고, 인증기관 로고	—	—
유 효 기 간	—	3년	3년	5년	분야별 다름
사 후 관 리	—	최소 1년	최소 1년	2년 기간	분야별 다름
복 보 수 (2001. 12월 현재)	• CNAL(실험실인정위원회)	• 품질 : 65개, 환경 : 21개 (2002. 7. 31일 현재)	• 18개 인증기관	• 의약품 인증 관리센터	• 산업별 인적자원부, CNAT • CNAT에 등록된 심사원교 육기관 16개
 심 사 원		• 품질 : 14899, 환경 : 4735	• 941	—	—
인 증 업 체 / 제 품 확 보 수 (2001. 12. 31)	• 373개	• 품질 : 57786, 환경 : 1024	..	• 2773(2002. 7. 31 현재)	• 관리시스템 심사원 2만여 명 • 실험실 평가원 2001명
국 제 교 류	• IAF, PAC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 참여	• IAF 가입(1998년 1월) • PAC 가입(1998년 1월) • IATCA 가입(1998년 8월)	—	—	• IATCA 가입(1998년 8월)
비 고	• ISO/IEC Guide 58참조 • ISO/IEC Guide 61참조	• ISO/IEC Guide 62참조 • ISO/IEC Guide 66참조	• ISO/IEC Guide 62참조	—	• ISO Guide 10015 참조

(다음에 계속)

제도 구분	수출입식품 생산기업등록 관리제도	관련 조직 자격 인정제도	각 산업 관계행정부처 검사제도(지방정부포함)	우수 업체, 우수 제품 평가제도	국내 활동 외국계 인증관련 기관 등록제도
주 요 목 적	• 소비자 이익 보호	• 소비자 이익 보호	• 소비자 이익 보호 • 안전, 건강 및 환경 보호	• 제품품질 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 사회 종합효율 향상, 경제 발전에 기여	• 소비자 이익 보호 • 인증 관련 감독체계 구축 • 인증사업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
주 관 기관	• CNCA • 지방 상검국	• 국무원 산업별 관계 행정부처 • 지방 산업별 관계 행정부처	• 각 산업 관계행정부처 • 각 지방 관계행정부처	• 산업별 관계행정부처 및 사회단체 • 지방별 관계행정부처 및 사회단체	• CNCA
관련 법 규	• '식품위생법', '상검법' • '수출입등식물검역법' • '수출식품생산기업위생등록관리방법' • '수입식품해외기업등록관리방법'	• '제품품질법' • '각 산업관련법규'	• '표준화법', '표준화법시행조례' • '제품품질법' • '각 산업관련법규'	• '공사법' • '제품품질법' •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품품질법' • '인증기관 및 인증관련 교육, 컨설팅 기관 승인 등록, 감독, 관리 방법'
인증 및 검사 대상	• '수출입식품위생등록시행 제품목록' • '위생등록 HACCP시스템 평가제품목록'	• 관련 법규에 따름	• 관련 법규에 따름	• 제도, 규칙에 따름	• 관련 기관 및 인원
평 가 내 용 및 방 법	• 서류심사 • 현장심사, 제품검사 • 사후관리	• 관련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사후관리	• 관련 법규에 따름	• 제도, 규칙에 따름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사후관리
제 도 의 성 격	강제 제도	강제 제도, 임의 제도	강제 제도	임의 제도	강제 제도
시 행 일 자	1994	-	-	-	2002년 5월 1일
인증 규격 또는 기준	• '수출입식품생산기업위생요구' • 'HACCP 요구'	• 관련 법규에 따라 다름	• 관련 기술법규	• 관련 기준	• 관련 기준
표 시 방 법	-	-	-	-	• CNCA 홈페이지에 등록
유 효 기 간	3년	• 분야별 다름	• 산업별 다름	• 재료별 다름	-
사 후 관 리	-	• 분야별 다름	• 산업별 다름	• 제도별 다름	• 매년
확 보 수 (2001. 12월 현재)	인증기한 • 각 지방 상검국	• 각 산업 관계행정부처 • 각 지방 관계행정부처	• 각 산업 관계행정부처 • 각 지방 관계행정부처	• 제도 도입 부처	-
인증 업체 / 제품 확보 수 (2001. 12. 31)	-	-	-	-	-
국 제 교류	-	-	-	-	• 등록 자본 35만 달러 • 2003. 12. 11일까지 외국계 투자가 경영권(지분에 따른)을 가진 법인 신청 불가
비 고	-	• 각 산업 제도간 조율 필요	• 각 제도간 조율 필요	• 품질관리상, 우수제품상 등 포함	• 2005. 12. 11일까지 외국계 독자법인 신청 불가

그러나 중국은 중국의 고유한 환경아래 다수 적합성 평가 활동이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발전해 왔으므로 민간적인 활동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활동이 더욱 강하며, 적합성 평가 활동의 형식도 단일이지만 중국 특성에 맞는 적합성 평가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현재 중국 WTO가입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서는 민간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적합성 평가 제도의 운영이 아주 필요할 것이다.

(5) 각 제도간의 조율과 감독 문제

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의 현행 적합성 평가 제도는 각양각색이다.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간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제도의 감독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체에 있어서 중복 인증, 중복 검사 등으로 인해 업체 부담이 커지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면,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4.2 중국 현행 적합성 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1) 적합성 평가 활동의 역할 문제

우선 적합성 평가 활동은 표준화 과정의 한 부분이라 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표준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표준화 요구 식별, 표준의 제·개정/공포, 표준화 보급 그리고 평가/개선 등 4개 단계로 구분되었는데 적합성 평가활동은 그중 표준화보급과정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야 되며, 표준화 과정 기타 단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통이익 추구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적합성 평가 제도에만 시장화를 요구해야될 뿐만 아니라 표준화 전 과정의 시장화를 추구해야 한다.

(2) 적합성 평가 활동의 이질성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적합성 평가활동에 한하여 효율적인 적합성 평가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차원에서 각종 적합성 평가 활동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제품인증 : 제품 규격에 따라 강제적, 또는 임의적 제품인증 활동을 의미한다.
- 나. 프로세스 및 방법 인증 : 가공 프로세스 및 검사방법에 대해 규격에 따라 관련 활동을 입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역시 강제적, 또는 임의적 인증 활동으로 구분한다.
- 다. 관리시스템 인증 : ISO9000품질시스템 인증을 비롯한 ISO 14000, QS-9000, HACCP 등 시스템 인증을

의미한다.

- 라. 인적자원 자격인정 : 심사원, 기술사, 약사 등 관련 업무 인적자원의 자격인정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도 역시 강제적, 또는 임의적 활동으로 구분한다.
- 마. 조직에 대한 자격인정 : 실험실 인정, 인증기관 인정 등 관련 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자격 인정 활동을 의미한다. 역시 강제적, 또는 임의적 활동으로 구분한다.
- 바. 각종 마크 제도 : 우수제품제도, 품질관리상 등 관련 업무의 우수성 추구를 위하여 도입된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임의적인 활동이다.
- 사. 각종 법규에 따라 행해지는 검사 : 각 산업 및 지방 관계 행정부처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에 따라 행해지는 각종 검사 활동을 의미한다.

3장에서 제시한 중국 현행 주요 적합성 평가활동은 상기 7가지 유형에 속한다.

각종 적합성 평가활동의 주요 목적과 역할 그리고 주도부문과 시행 가능한 운영방식을 분석하면 <표4.1>과 같다.

(3) 적합성 평가활동의 서비스 의식과 독립성 문제

상호 제약하면서 또는 촉진되는 적합성 평가활동의 서비스 의식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성 평가 활동을 특성, 목적 그리고 역할에 따라 분류하여 제도별로 효과적이면서 또는 다양한 운영방법과 형식을 모색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일괄적인 적합성 평가 활동은 적합성 평가활동의 다양한 목적과 요구를 만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적합성 평가활동간의 조화는 이루어져야 되므로 현재 CNCA가 중국정부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전국의 적합성 평가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CNCA의 통일적인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행하며, 범위와 심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따라 적합성 평가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도입되는 각종 적합성 평가활동간의 조율을 이루는 한편, 적합성 평가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표준화사업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적합성 평가 운영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

(4) 적합성 평가 제도의 단일성 문제

적합성 평가제도 단일성 문제의 해결책은 역시 적합성 평가제도 목적달성을 초점을 두어 적합성 평가 활동의 공적인 개입을 제한하고, 사업과 산업으로 하여금 법

<표 4.1> 제 적합성 평가제도의 유형별 특성

구 분 제 도		주요 목적 및 역할	적당한 적합성 평가제도	주관 부문	주요 관리 항목	주 의 사 항
제 품 인증	강제적	• 환경 및 인류건강 보호 • 공공 이익 보호	• 제3자	• 정부	•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확보 •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적합성 평가제도 및 관련 기관들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감독시스템의 운영 강화 ‘적합성 평가 마크’관리시스템의 구축·시행 통일적 관리 척도의 수립, 적합성 평가제도 주요 목적과 역할에 따라 척도 조절
	임의적	• 표준화 추진 • 기술장벽 제거	• 제1자 • 제3자	• 민간단체	• 서비스 의식 강화, 공정성 확보 • 기업체의 책임강화	
프로세스 및 방법 인증	강제적	• 환경 및 인류건강 보호 • 자원 절약	• 제3자	• 정부	•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확보 •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기술, 공정, 방법의 보급 서비스 의식 강화, 공정성 확보
	임의적	• 표준화 추진 • 기술장벽 제거	• 제1자 • 제3자	• 민간단체	• 서비스 의식 강화, 공정성 확보 • 기업체의 책임강화	
관리시스템 인증	임의적	• 경쟁력 향상 • 기술장벽 제거	• 제1자 • 제3자	• 민간단체	• 서비스 의식 강화, 공정성 확보 • 기업체의 책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개발자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 맹목적인 독립성 추구 불필요 각종 적합성 평가 활동 간의 조율 강화, 특히 강제성인증과 법규에 따른 검사 제도 간의 조율을 통하여 중복감사 제거 적합성 평가활동을 통하여 표준화 사업의 시장화 도모 이익 추구형 적합성 평가활동의 제한
인적 자원 자격 인증	강제적	• 인류의 안전/건강 보호 • 소비자 이익 보호	• 제3자	• 정부	•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확보 • 감독 강화	
	임의적	• 표준화 추진 • 경쟁력 향상	• 제1자 • 제3자	• 민간단체	• 서비스 의식 강화, 공정성 확보 • 투명성 확보	
조직 대 대 자격 인증	강제적	• 환경 및 인류건강 보호 • 소비자 이익 보호	• 제3자	• 정부	•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확보 •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의식 강화, 공정성 확보
	임의적	• 경쟁력 향상 • 표준화 추진	• 제1자 • 제3자	• 민간단체	• 서비스 의식 강화, 공정성 확보	
각 종 마크 제도	임의적	• 경쟁력 향상 • 표준화 추진	• 제3자	• 민간단체	• 서비스 의식 강화, 공정성 확보 • 특색화 도모, 신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추구형 적합성 평가활동의 제한
각종 법규에 따른 검사	• 환경 및 인류건강 보호 • 공공 이익 보호	• 제3자	• 정부	•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확보 • 감독 강화		

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 <표 4.1>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적합성 평가활동의 민영화, 사회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5) 각 제도간의 조율과 감독 문제

우선 법적인 차원에서 각 제도간의 조율 방법을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행 가능한 효과적인 조율 방법 그리고 조율 제도(예: 부급연석회의제도)를 도입하고, 감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적합성 평가활동 감독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적합성 평가 마크”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합성 평가 마크”관리 시스템의 주요점은 다음의 4가지 방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적합성 평가 마크”的 체계화

우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종 “적합성 평가 마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사용 목적 및 범위에 따라 분류

한 후,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관리하기 편리한 차원에서 “적합성 평가 마크”的 디자인 또는 사용 범위를 명확화 한다.

나. “적합성 평가 마크”的 디자인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보급

“적합성 평가 마크”的 디자인 및 사용방법 보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한다. 보급시스템은 각 계층 관계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IT화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 “적합성 평가 마크”的 등록 및 소유권 관리

“적합성 평가 마크”유형별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제도와 결합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이던 “적합성 평가 마크”的 명확화, 합법화 그리고 공개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라. “적합성 평가 마크” 사용에 대한 감독 “적합성 평가 마크” 사용에 대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한다. 감독 시스템은 “적합성 평가 마크”的 합법성만 감독하는 것으로 구축될 수 있고, 또한 적합성 평가 활동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감독 활동과 결합하여 구축할 수도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적합성 평가활동에 대한 정의, 목적 및 동향을 정리하는 한편, 중국 적합성 평가활동 발전과정 및 현행 주요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정보화와 기술혁신이 눈부시게 진전되면서 적합성 평가활동 범위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 방법 또한 다양화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중국이 WTO가입 초기에 WTO/TBT협정 및 국제 적합성 평가시스템과의 접목을 도모할 시 중국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역외 나라에 있어서 중국 적합성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과제로는 각종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효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중국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 "중국질량인증", 1999년 1호-2002년 7호, 중국인증인정감독관리 위원회
- [2] 중국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표준연구센터, "세계 표준화 및 품질관리", 2001년 1호-2002년 7호, 중국 표준연구센터
- [3] 중국기술감독정보협회 중국WTO/TBT질의처, "기술감독실용기술", 2001년 1호-2002년 2호, 중국WTO/TBT 질의처
- [4]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연구원, "글로벌 스텠더드", 2001년 4호-2002년 봄호, 산업표준연구원
- [5] 중국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 안전과학기술연구중심, "중국직업안전위생-관리시스템인증", 2001년 1호-2002년 1호, 안전과학기술연구중심
- [6]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중화인민공화국 WTO 가입협정서", 2001,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7]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강제성제품인증 관리 규정, 2001.11.21,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 총국
- [8]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개정안), 2000.7.8, 중국국가품질감독 검험검역 총국
- [9] 중국국가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 "인증기관 및 인증 관련 교육, 컨설팅기관 승인 등록과 감독 관리방법", 2002년 제21호 고시, 중국국가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